

# 조선시대 검시의 과학성

곽 정 식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 A Review of Postmortem Investigation of Joseon Dynasty in the Aspect of Recent Forensic Medicine

Jyung Sik Kwak, M.D., Ph.D.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bstract** - In the era of Joseon Dynasty there was a national system of postmortem investigation with literatures of postmortem inspection. The author reviewed the postmortem findings in the literature(Shinjumoowonrok) to compare with recent knowledges of forensic medicine. Characteristics of old system of postmortem investigation was three instance investigation system and was carried out only with a postmortem inspection without autopsy. The postmortem findings described in the old literature were about various kinds of death, such as cases of suicide and homicide and natural and unnatural death. Most of postmortem findings in the Shinjumoowonrok were accurate and reasonable in the aspect of recent knowledges of forensic medicine.

**Keywords** : Joseon Dynasty, Shinjumoowonrok, postmortem investigation

### I. 序 論

“옛것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는 말로 수 천년 전에 이미 학문을 하는 옳은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 자연과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지는 부분적으로는 수백년이 넘었으나 양의학이 도입된 것은 1세기 남짓할 뿐이다. 그러나 법의학 분야는 동양의 사상을 토대로 일찍 부터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의학의 뿌리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거니와 세간의 관심도 없다. 그래

서 조상들의 검시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하여 조상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신라시대 이전에는 검시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고려시대에서는 남송의 송자(宋慈)가 지은 세원집록(洗冤集錄)의 혐시법(驗屍法)이 실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 충렬왕 34년(1308년)에 원(元)의 왕여(王與)가 무원록(無冤錄)을 저술하였는데 당시로서는 가장 체계를 갖춘 문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혐증(驗證)을 중시하던 고려로서는 의학적 기록은 없으나 원으로부터 이 책이 전해졌으리라 추측되며 실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sup>1)</sup>.

조선시대에서는 세종 20년(1438년)에 원나라의 무원록에 음주(音註)를 가하여 최치운 등이 지은 신주무원록(新

Corresponding author: Jyung Sik Kwak, M.D., Ph.D.

Tel : 053-420-4885, Fax : 053-422-4712

jskwak@knu.ac.kr

註無冤錄)이 반포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검시장식(檢屍狀式)을 간행하여 인명치상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는 시체가 있는 현장에서 검증을 행한 후 검시장식이 정한 대로 시체 검안서를 만들어 법의학적 지식을 응용한 재판을 실시하였다<sup>2)</sup>.

영조 24년(1748년)에는 구택규(具宅奎)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 간행하였고 정조 20년(1796년)에는 그의 아들인 구윤명(具允明)이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 및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를 간행하였다. 이 두 검시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검험의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객관적 관찰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근대 법의학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sup>3)</sup>.

저자는 신주무원록 역서<sup>4)</sup>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검시의 과학성을 현대의 법의학적 지식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 1. 조선시대 검시 제도 특징<sup>5)</sup>

지금은 부검과 검안을 같이 시행하지만 조선시대 검시(檢屍)의 가장 큰 특징은 검안(檢案)만으로 검시를 시행한 것이다. 시체의 외표소견만 관찰하는 검안만으로는 검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록을 보면 선조 때의 인물인 전유형(全有亭)이 임진왜란 때 호남에서 적군의 시체를 3차나 해부하였다는 기록이 성호쇄설(星湖僊說)에 있다<sup>6)</sup>. 그러나 전유형이 해부를 한 뒤 남긴 기록은 없다. 조선시대에서는 검시에서 부검을 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검시서에도 부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시의 검시는 검안만으로 시행했다는 것이 정설로 인정된다.

조선시대의 검시는 삼검제도였다. 즉 세 번까지 검시가 가능하였다. 초검(初檢)은 첫 번째 하는 검시로서 사건이 있는 지방의 책임 관료가 검시책임자가 되어 현지에 임검해서 검시를 시행하였다. 지금은 인력부족으로 일일이 현장 임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검시설과 인력이 있는 곳으로 시체를 운반하여 검시를 하는데, 검시에서는 현장의 임검이 원칙이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권장해야 할 방법이다. 복검(覆檢)과 삼검(三檢)은 유족이 초검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때 시행한다.

조선시대에는 검시를 하는 데 필요한 보조 도구로서 국가가 지정한 범물(法物)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길이를 재는 자로서 관척(官尺), 즉 국가가 지정한 자를 사용하였으며, 증독사를 검사할 때 쓰는 은으로서의 순도가 100%

인 은비너를 국가가 제작하여 사용케 하였다. 그 외 검안할 때 악취를 제거하거나 상흔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조물로서 한약제, 식물, 광물 등을 국가가 지정하였다. 지금은 도량형기의 정확성이 보편화되어 있고 시체의 보존 방법 등이 발달하였기에 이러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표준화 개념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실증과학의 사상이 이미 있었다고 본다.

검시 방법에 있어서도 검시관은 죽은 자와 가까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검시 보조원인 향인(行人), 혹은 이인(吏人)들을 검시관이 감시하여 부정을 막고 객관성의 유지에 힘썼다. 공초 내용도 합일성을 강조하였으며 검시 후 문서 작성도 정확성과 엄격성을 강조하였다. 즉 검시는 검시장식에 명시된 곳을 빠짐없이 검사하고 그 소견을 기록해야 하며 용어도 통일하였다. 예를 들면 흉기를 이룰 때 손과 발로 찼을 때는 수족(手足), 날이 있는 흉기는 인물(刃物), 그 외는 모두 타물(他物)로 표기하였다. 독살된 중독과 스스로 음독한 복독치사(服毒致死)를 구별하였고, 의사(縊死)에서도 스스로 목을 맨 자액(自縊)과 남이 매단 조액(弔縊)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규정 모두가 검시의 질을 높이고 공정,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검시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지금과 비교하면 법의학자로서 부끄러울 뿐 아니라 부럽기조차 하다.

검시의 과정을 보면 출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였다. 일시(日時)는 물론, 검시인, 현장 장소, 거리 등을 기록하였다. 현장에서는 유족과 범행자 등, 사건 관련자를 소집하여 공초를 하였으며 검시는 현장 상황과 시체의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여 상세히 기록하게 하였다. 이 기록을 시장(屍帳)이라 하는데 3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복검 혹은 삼검을 대비하여 시친(屍親), 즉 유족에게 주며, 한 부는 검시인이, 나머지 한 부는 상부에 보고할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검시가 끝나면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하거나 복검 혹은 삼검을 위해 간수하였다. 이들 과정을 요약하면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현장을 묘사하고, 시체를 검시하였으며 그 후 검시 참여인들의 서약을 받고 시장을 작성한 연후에 시체에 대한 후속 처리가 시행되었다. 사건발생 지역의 군, 현의 수령이 초검을 하며 복검시에는 인근 군, 현의 수령이 검시를 담당하였다. 지금의 제도와 비교하면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이 있다는 점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 이처럼 수백년 전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죽은 자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지금보다 나은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검시 후 보고서 혹은 감정서에 해당하는 사건의 결안(結案)은 해당 도(道)에 올리고 도는 결안을 검토한 후 형조에 보고를 하였으며 형조는 추심 후 왕의 재가를 받았다. 삼검을 해야 할 때는 조정에서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검시를 책임지게 하였다. 복검 및 삼검을 할 때 그 전에 검시한 결안을 못보게 하였다. 만약 초검이나 복검시 사인의 판단에 고의적인 오류가 있을 때는 즉시 파직당하며 또한 그 책임을 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초검을 담당하는 군, 현의 수령은 검시 지침서인 신주무원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조선조에서는 전국의 군, 현의 수령이 모두 검시관, 즉 지금과 비교할 때 법의의사 역할을 해야 하였다. 따라서 지금처럼 법의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과 비교할 때 한번 더 선조들의 현명함에 가슴이 저릴 뿐이다.

## 2. 조선시대의 법의학적 판단

신주무원록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상은 총론 격인 논변과 17격례(格例)로 되어 있고 권하는 각론격으로 43례의 사인별 소견이 기술되어 있다. 검시 방법은 검안이었기 때문에 시체의 외표소견만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시체의 색깔과 안색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면 안색이 적색계이면 구타나 목매 상흔이, 청색계이면 질식사나 중독사, 흑색계이면 부패가 원인이라고 기술하였다<sup>5)</sup>. 얼굴의 색깔만으로 그 많은 사인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인을 검안, 즉 시체의 색깔과 상처의 모양만으로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안면의 색깔이 붉을 때, 사인으로 구타나 목을 매었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판단이다. 구타에 의한 좌상, 찰과상 등은 그 색깔이 붉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목을 매었을 때 얼굴에 울혈이 생기면 얼굴 전체가 붉게 보인다. 얼굴이 청색계이면 질식사나 중독을 생각했는데 이 또한 근거가 있다. 완전 의사(縊死)와 같이 목이 심하게 졸리면 뇌로 가는 동맥이 모두 차단되어 얼굴에 청색증이 생긴다. 그리고 가스나 독극물의 일부는 메트헤모글빈혈증을 야기하여 청색증이 생긴다. 부패가 심하면 신체, 특히 얼굴은 검은색을 띠며 거인모양의 얼굴이 된다. 다만 그 당시의 판단 기준이 열거한 전체의 사인에 다 맞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의 법의학적 지식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이다.

시체의 부패 정도와 시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부패의 정도를 소견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였

고, 계절에 따라 각 단계의 부패 소견을 기술하였으며 부패의 정도와 걸리는 시간까지도 자세히 분류하였다<sup>6)</sup>. 예를 들면 시체의 색깔이 푸르스름할 만큼 부패하는 데 봄, 가을은 2~3일, 여름에는 1~2일, 겨울에는 4~5일 정도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지적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검안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 3. 사인별 검안 소견

목 졸려 죽는 경우 “시체는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릅뜨며 목 위에 졸린 흔적이 검은 색이고 들레는 몇 촌이 되며, 깊이와 너비는 몇 푼이 된다. 인후가 꺼지고 목에 액흔이 감돌아 교차되어 있으면 살해된 것이 틀림없다.”<sup>7)</sup> 라는 기술이 있다. 색흔에 대한 기술은 매우 정확하며, 액흔이 감돌아 교차되어 있다는 표현은 교사의 소견과 매우 닮았고 교사의 다수가 타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술이다.

또한 “자액으로 위장한 경우는 …숨통 아래에 혈맥이 통하지 아니하므로 액흔이 얇고 흐려서 피땀한 자국이 없다. …목 위에 손톱에 긁힌 흔적이 있고, 몸의 급소에 치명할 만한 상처가 있다.”<sup>8)</sup> 위장 자액, 즉 살해한 후 의사(縊死)로 위장한 경우인데 “액흔에 피 땀한 자국이 없다”라고 하였다. 생전에 목을 매면 색흔 부위에 피하출혈이 생기나 죽은 후에 목을 매면 피하 출혈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강제로 목을 매달거나 끈으로 목을 조르면 반항하거나 강제로 목을 매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상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후 목을 매달았다면 당연히 사인이 따로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도 정확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머리 윗쪽의 달아맨 곳이 너무 높거나 커서 손으로 잡을 수 없거나 기어 올라갈 수도 없는 곳이라면 이는 다른 사람이 달아맨 것이다.”<sup>9)</sup> “혹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줄이나 끈으로 인후를 졸려 매달아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이를 자액(自縊)으로 확실하게 알겠는가?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sup>10)</sup> “죽은 후에 목을 매인 경우, 피땀한 자국이 없고 결박 흔적이 비록 피부 깊숙이 있다 해도 푸르거나 검붉거나 붉은 색이 아니고 단지 흰빛을 띠 뿐이다.”<sup>11)</sup>

이와 같은 기술은 지금의 법의학 교과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표현이다. 자살은 죽는 방법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손으로 죽을 수 없는 방법이라면 이는 타살이다. 그리고 죽기 전 의식이 없는 상태, 즉 심한 음주나 수면제 등의 복용 후와 같은

상태에서는 위장 의사나 교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검안이 유일한 검시 방법이지만 지금은 부검을 하기 때문에 독극물 감정에 의해 이를 밝힐 수가 있다. 그리고 사후 끈을 매었을 때 피하 출혈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술하여 강조하고 있다. 목 졸렸을 때 자·타살을 반드시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물에 빠지거나 몸을 던져 죽은 경우: “시체는 살빛이 문드러져 허영고, 입은 벌리고 눈을 감았으며, 복부가 팽창하고, 손톱에 진홍이나 모래가 있으니, … 다른 사람에게 구타당하여 피살된 후 물속에 던져진 경우…복부는 팽창하지 아니하고 몸에 상흔이 있고, 손톱 틈에 모래나 진홍이 없다.”<sup>12)</sup>

이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에 대한 기술이다. 구타로 살해당한 후 투수된 경우의 소견으로 몸의 상흔과 손톱틈의 이물에 의미를 두었다. 이 모두 근거 있는 지적이다.

“일부러 죽으려고 우물에 투신한 경우는 반드시 다리가 아래쪽에 있으니 만약 머리가 아래에 있으면 이는 남에게 쫓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밀어 우물에 빠진 것이다.”<sup>13)</sup>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지거나, 남에게 떠밀려 우물에 빠지거나 실족하여 우물에 빠져죽은 시체들은 대동소이하다. 모두 머리와 눈이 벽돌이나 돌에 부딪히고 마찰된 흔적이 있고 손톱과 모발에 모래와 진홍이 있고 …”<sup>14)</sup>

요즘은 우물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세한 기술은 지금의 법의학 교과서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자한자 음미해 보면 우물에 빠지는 동작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기술하였다. 그 당시의 시대상황과 연관한 기술로 흥미롭다 아니 할 수 없다.

맞아 죽은 경우: “타물(他物)이나 이마, 주먹이나 손, 발이나 다리 등 단단한 물건으로 때린 경우, 상처의 모양과 색이 매우 심한 경우는 검붉으며 약간 부어오르고, 그 다음 심한 경우는 검붉거나 붉으면서 약간 부어오르고, 다음은 검붉거나 붉지만 부어오르지는 않았고…”<sup>15)</sup>

“만일 시체의 좌측이 손상되었으면 이는 곧 범인이 오른손으로 물건을 잡고 구타한 까닭이요…”<sup>16)</sup>

이는 좌상에 대한 설명으로, 심한 경우는 피하출혈 양이 많아 색깔이 검붉고 종창이 생긴다. 그 정도에 따라 좌상의 모양을 기술한 것으로 매우 정확하다. 또한 상처의 위치와 가해자가 사용한 손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또한 맞는 말이다.

칼날 등에 의해 살해된 경우: “칼날이나 예리한 물건에 상해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검험하면, 상흔 어귀의 피육에 피가 있고, 내막이 뚫렸으며, 살이 넓게 벌어지고, 화문(花文)이 밖으로 나와 있으며 손가락으로 집으면 선홍색 피가 나온다.”<sup>17)</sup> “살해될 정도의 상해를 입는 경우, …반드시 다투면서 손으로 칼을 막으려다 손에 상처를 입게 된다.”<sup>18)</sup>

예기손상에 관한 기술로 창연의 출혈, 흉막이나 복막의 자창, 화문, 즉 피하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창연의 반전과 피하조직내 출혈 등을 구별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자창에 의한 사망자에서 손에 방어손상이 흔히 있는데 이것도 기술하였다.

“…반드시 원래 입고 있던 의상의 파손처 유무를 살펴 보아, 의복에 찍혀 있는 핏자국에 은밀히 견주어 보면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신체의 자창이 있을 때 자살이었다면 의복을 건어 올리고 스스로 신체를 찌르나 타살인 경우는 옷 위로 찌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자창이 사인일 때 자타살의 구별은 의복의 손상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체의 상처와 옷의 손상을 맞추어 보는 것은 법의학의 상식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칼날에 상해를 입어 죽는 경우는 피육이 긴축하고 사방에 피가 어리게 된다. 만약 사지가 절단된 경우는 근골과 피육이 서로 엉겨 붙고 칼에 찢린 곳은 피부가 오그라들고 뼈가 드러난다. 죽은 사람이 베이고 잘린 경우, 시체의 피육과 피는 그대로 있고 피가 흘러 맺히지 아니하며, 베인 곳의 피부가 오그라들지 아니하고, 칼날이 끝난 곳에 피가 흐르지 아니하며 그 색이 희다.”<sup>20)</sup>

신체에 자창, 자절창 등이 있을 때 상처가 생긴 혹은 사후에 생긴 것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며, 그 이유까지 설명한 것이다. 덧붙일 말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정확한 기술이다.

독을 먹고 죽은 경우: “본 시체는 입술이 찢어지고 혀가 문드러지고, 입안이 검붉거나 검고, 손톱이 푸르다. 은비너를 깊이 넣었다가 조금 후에 꺼내어 보면 비너가 검게 변한다. 이와 같으면 생전에 중독으로 치명할 것이다.”<sup>21)</sup> “또 백반(白飯) 한 덩이를 죽은 사람의 입안 목구멍 속에 집어 넣고 종이로 덮어 한두 시간 지난 후, 밥을 꺼내 닭을 주어 먹이는데 닭도 또한 죽으면 독사(毒死)이다.”<sup>22)</sup>

중독사인 경우는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독극물의 종류가 많지 않아 그 소견을 단순하게 기술하는 것이 가능했으리라 추정한다. 독극물의 pH, 점막의 손상정도, 조직

의 부식정도, 혈액 성상의 변화 등에 따라 외표소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를 열거하고 중독사를 의심케 하였다. 그리고 은비녀를 사용해서 독극물 유무를 판정하였는데 모든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은을 변색시키는 것은 아니나 오존이나 유황이 은을 변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한정된 범위에서 감정이 가능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또 중독사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실험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도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복어독과 같은 생물독은 화학적 검출이 불가능해서 실험 동물을 이용한 생체 실험으로 검정한다. 이는 수백 년 전에 생체실험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불에 타 죽은 경우: “본 시체는 피부가 모두 타고 살이 문드러졌으며, 손과 발을 모두 오그리고 있고 입, 코, 귀 안에 모두 그을음과 재가 들어있으니 이는 생전에 불에 타 죽은 것이다.”<sup>23)</sup>

“생전에 불에 타 죽은 경우는 시체의 입과 코 안에 그을음과 재가 들어있고... 죽기 전에 불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입이 벌어져 기맥이 왕래하므로, 호흡하면서 그을음과 재가 코와 입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sup>24)</sup>

소사 혹은 화재사에 대한 설명으로 화재의 현장에서 호흡을 하였다면, 즉 화재사인 경우 기도를 보면 매연이 많이 붙어 있다. 이것으로 쉽게 판단을 하는데 화재사의 법의학적 소견의 기술은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얼어 죽은 경우: “본 시체의 경우, 목이 오그라들고 발을 구부렸으며, 두 손은 가슴을 껴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며 살빛이 누렇게 긴축되었으니 이는 동사(凍死)이다.”<sup>25)</sup>

동사의 특이한 소견은 없다. 주위 환경이 동사할 상황이고 동사 이외의 다른 사인이 없을 때 동사로 판단한다. 동사체의 모양에 대한 기술로 동사체의 모양이 시대가 다르다고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이라.

침구 등을 시술 받은 후 즉시 사망한 경우: “반드시 의원을 불러 침구 놓은 자리가 올바른 혈(穴)인지 아닌지를 검사하여...”<sup>26)</sup>

한방에서 말하는 혈, 경락 등의 의학적 근거가 불명하기 때문에 언급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지적은 의료사고의 개념이 조선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근거이다. “올바른 혈(穴)

인지 아닌지를...”이라는 말을 “올바른 의학적 방법인지 아닌지를...”이라고 바꾸면 이해가 쉽게 가는 대목이다.

벼락 맞아 죽은 경우: “...몸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손바닥만하게 들뜬 피부가 검붉어서 붉은 빛을 띤다... 가슴, 목, 윗팔 위에 전문(篆文)과 같은 흔적이 있다.”<sup>27)</sup>

낙뇌사의 소견으로 피부와 옷 사이의 공기가 수억 볼트의 전기에 의해 팽창하여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만드는 공기에 의한 찰과상, 그리고 모세혈관의 경련에 의해 생기는 뇌문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의 법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하여 양피(羊皮) 모양 찰과상과 뇌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같은 말이다.

친생(親生)의 혈속(血屬)을 판별하는 법: “...몸을 찢러 한두 방울의 피를 내어 해골 위에 떨어뜨리는데 친생이라면 핏방울이 뿔속으로 스며들고...”<sup>28)</sup>

이는 개인 식별의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그 방법의 과학성은 없다. 그러나 그 시대에 개인 식별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 당시의 과학지식으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나 개인 식별은 법의학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미 우리 선조는 지금의 법의학자와 다름없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증빙할 근거가 없는 경우: “나리와 안색 및 용모를 알 수 없어 치사 원인을 판정할 수 없으며, 또 손으로 상하를 문질러도 손상된 뼈가 없는 경우이다.”<sup>29)</sup>

사인 불명의 경우로서 검안만으로는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부검을 해도 사인을 알 수 없는 무소견 부검이 3~5% 정도에 이르는데, 그 당시에도 사인 불명인 경우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저자는 이에 대해 모름지기 최선을 다하는 검시를 함으로써 사인 불명의 예를 최소화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 외에도 호랑이, 뱀, 벌레, 쥐, 개 등에 물려죽은 경우, 말에 밟혀죽은 경우, 수레에 치인 경우, 구비(口鼻) 폐쇄, 놀라서 죽은 경우, 추락사, 압사, 장살(杖殺), 죄수가 심문 받다가 죽은 경우, 음식과 술을 포식하여 죽은 경우, 딱딱한 물체에 부딪쳐서 죽는 경우, 건조한 시체, 임시로 매장한 시체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지면의 한계가 있어 모두 언급할 수 없음이 유감이나 이에 대한 기술 모두

가 지금의 법의학적 지식과 비추어 전혀 손색이 없는 지식  
 입에 거둬 감탄할 뿐이다.

## 맺 음 말

한마디로 신주무원록은 조선초기의 완전히 토착화한 검  
 시서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의 과학성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문헌에는 검시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유의손(柳義孫)이  
 쓴 신주무원록의 머릿말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줄고  
 를 끝맺을까 한다.

“오호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끊어진 자는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 검험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억울함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니 신  
 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잘못과 옳음을 살펴 죄의 경중(輕重)을 저울질 한다면  
 어찌 형벌의 적중(的中)을 잃어 원망을 부르고 화기(和氣)  
 를 상하는 일이 있겠는가?”<sup>30)</sup>

### 참고문헌

1. 김두중 : 한국의학사, 탐구당, 서울, pp. 169-170, 1966
2. 김두중 : 한국의학사, 탐구당, 서울, pp. 290, 1966
3. 김두중 : 한국의학사, 탐구당, 서울, pp. 384, 1966

4.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5.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13-41
6. 김두중 : 한국의학사, 탐구당, 서울, pp. 373, 1966
7.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335
8.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337
9.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363
10.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367
11.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369
12.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373
13.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375
14.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387
15.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11
16.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13
17.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19
18.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21
19.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23
20.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25
21.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55
22.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61
23.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77
24.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87
25.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501
26.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523
27.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525
28.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91
29.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549
30. 김호 : 신주무원록역서, 사계절, 서울, 2003, pp. 49